

의안번호	2210396
의 퇴 인	곽규택의원
회 답 일	2025.6.24.
추 계 번호	25B270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적소관청이 공유토지 분할 조사 및 측량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행정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억 7,0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7억 100만원(연평균 3억 4,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안 제9조·제10조)	329	329	329	-	-	987	197
조사와 측량 (안 제22조)	241	241	241	-	-	723	145
합계	570	570	570	-	-	1,710	342

주: 본 추계값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3년(2017~2019년) 동안 발생한 재정소요를 바탕으로 제정안의 시행 비용을 추산한 결과이며, 향후 공유토지 분할 관련 수요 변동 등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¹⁾ 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	의무규정
2	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3	안 제22조 (조사와 측량)	지적소관청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에서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측량하여야 함(제1항) 1. 공유자별 공유지분 현황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 2. 공유자별 점유면적·경계선 그 밖의 점유현황 3. 사설도로 그 밖에 공공의 용도에 사실상 제공되고 있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는 부분(이하 “사설도로 등”이라 한다)의 현황 4. 그 밖에 분할 및 청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안 제29조 (조서등본의 송달 및 공고)	지적소관청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의 의결이 있 는 때에는 분할조서등본에 그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 및 청산한다는 취지와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는 취지 및 기한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각 공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31조 (이의신청의 결정 등)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이의 신청일부부터 4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위원회의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 게 송달하여야 함(제1항)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분할조서의 해당부분을 정정하고, 신청인과 관련 공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정정한 분할조서등본을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함 (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39조 (분할등기완료의 통지)	지적소관청은 등기관이 분할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 이 각 공유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권리자(압류·가압류· 가처분의 권리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 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9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 (추계) 안 제9조·제10조 및 안 제31조에 따라 공유 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 이의신청 결정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지적소관청”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연 번	조·항(조제목)	추계부	비고
2	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서 정본을 송달할 경우 소요비용은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 실적치를 바탕으로 추계
3	안 제31조 (이의신청의 결정 등)		
4	안 제22조(조사와 측량)	○	• (추계) 안 제22조, 제29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조사와 측량 등을 실시할 경우, 제도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본 추계는 동 제도가 운영된 최근 3년간 각 지적소관청의 조사 및 측량을 위한 평균 운영비용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안 제43조는 동법에 따른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유토지를 분할취득하는 각 공유자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음
5	안 제29조 (조서등본의 송달 및 공고)		
6	안 제39조 (분할등기완료의 통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참고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안 제9조·제10조 및 제31조)과 공유토지분할 조사 및 측량제도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안 제22조, 안 제29조 및 제39조)으로 구분함
 -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 조사 및 측량제도가 운영된 2017~2019년 3년간의 재정소요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 1986년 이후 4차례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법으로 제정·시행된 바 있으며, 2020년 5월 22일 유효기간 만료로 종료됨²⁾

2) [참고자료 1]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혁 참고

가. 안 제9조(공유토지분할위원회)·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안 제31조(이의신청의 결정 등)

- 제정안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포함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
-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운영계획이 불확정적이므로, 2017~2019년 3년간 위원회 운영 실적치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동법의 유효기간 만료전인 2017~2019년 3년 동안 평균 213개 시군구에 동 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으며, 위원회당 평균 155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 위원회수: 2017년 221개 위원회, 2018년 208개 위원회, 2019년 210개 위원회
 - 운영비: 2017년 위원회당 평균 155만원, 2018년 158만원, 2019년 149만원

[표 2]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실적: 2017~2019년

(단위: 개소, 천원)

	2017		2018		2019		연평균	
	위원회수 (시군구)	위원회당 평균 운영비	위원회수 (시군구)	위원회당 평균 운영비	위원회수 (시군구)	위원회당 평균 운영비	위원회수 (시군구)	위원회당 평균 운영비
서울특별시	24	1,259	20	1,395	22	1,173	22	1,275
부산광역시	15	1,046	14	998	15	1,062	15	1,036
대구광역시	6	1,206	7	1,092	6	1,225	6	1,174
인천광역시	9	1,969	8	2,041	8	2,153	8	2,054
광주광역시	4	1,498	5	1,466	5	1,450	5	1,471
대전광역시	5	1,632	5	1,632	5	1,430	5	1,565
울산광역시	5	1,340	5	1,340	5	1,340	5	1,340
세종시	1	770	—	—	—	0	—	257
경기도	41	1,987	41	1,736	40	1,686	41	1,803
강원도	16	1,421	16	1,542	14	1,445	15	1,469
충청북도	12	1,491	14	1,397	14	1,565	13	1,485
충청남도	16	1,511	16	1,669	16	1,500	16	1,560
전라북도	11	1,762	13	1,590	12	1,761	12	1,704
전라남도	13	1,930	7	2,293	10	1,811	10	2,012
경상북도	21	1,773	19	2,241	20	1,665	20	1,893

	2017		2018		2019		연평균	
	위원회수 (시군구)	위원회당 평균 운영비	위원회수 (시군구)	위원회당 평균 운영비	위원회수 (시군구)	위원회당 평균 운영비	위원회수 (시군구)	위원회당 평균 운영비
경상남도	20	968	16	1,038	16	1,026	17	1,011
제주도	2	1,680	2	1,680	2	1,680	2	1,680
합계	221	1,553	208	1,584	210	1,492	213	1,546

자료: 국토교통부가 전국 시군구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 (추계결과) 최근 운영된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전국 213개 시군구에서 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 동안 9억 8,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회수(A)	213	213	213	-	-	-
위원회 운영비 단가(B)	1.5	1.5	1.5	-	-	-
합계(A×B)	329	329	329	-	-	987

나. 안 제22조(조사와 측량)·안 제29조(조서등본의 송달 및 공고) 및 안 제39조(분할등기완료의 통지)

- 제정안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별 공유지분 현황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 공유자별 점유현황, 사설도로등의 현황 등의 사항에 대한 조사·측량 등을 시행하는 경우 제도운영을 위한 출장비 등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제정안 제43조는 이 법에 따른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유토지를 분할 취득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유자별 토지 등 조사 및 측량 등에 따른 비용은 각 공유자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지적소관청의 공유지분 현황 등 조사 및 측량을 위한 제도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 바 있으나, 향후 예상되는 조사 및 측량 등에 대한 수요를 알 수 없으므로, 2017~2019년 3년간 실적치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조사 및 측량이 이뤄진 시군구는 매년 평균 60개소이며, 운영비는 2.4억원(7.2억원÷3개년=2.4억원) 수준으로 나타남
 - 평균 1개 시군구 당 연간 401만원 소요예상

[표 4] 조사 및 측량 실시에 따른 행정비용 실적: 2017~2019년

(단위: 개소, 천원)

	2017		2018		2019		합계	
	시군구수	운영비	시군구수	운영비	시군구수	운영비	시군구수	운영비
서울특별시	10	7,528	10	28,969	9	8,825	29	45,322
부산광역시	5	8,855	3	2,965	3	3,285	11	15,105
대구광역시	2	39,744	2	37,244	3	41,000	7	117,988
인천광역시	—	—	—	—	—	—	—	—
광주광역시	2	430	2	590	2	778	6	1,798
대전광역시	5	34,536	4	31,843	4	33,753	13	100,132
울산광역시	2	11,440	2	1,630	2	1,550	6	14,620
세종시	—	—	—	—	—	—	—	—
경기도	4	24,358	5	27,065	5	29,994	14	81,417
강원도	4	17,851	5	19,344	6	19,287	15	56,482
충청북도	4	3,650	4	3,300	4	4,500	12	11,450
충청남도	3	21,200	2	19,788	2	20,046	7	61,034
전라북도	2	1,200	2	1,200	2	1,200	6	3,600
전라남도	3	27,000	4	28,174	3	27,930	10	83,104
경상북도	9	28,005	11	43,665	11	37,392	31	109,062
경상남도	5	9,589	4	5,512	5	6,892	14	21,993
제주도	—	—	—	—	—	—	—	—
합계	60	235,386	60	251,289	61	236,432	181	723,107

자료: 국토교통부가 시군구를 대상으로 취합한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 최근 운영된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및 측량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 동안 7억 2,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조사 및 측량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시·군·구 수(A)	60	60	60	-	-	-
조사 및 측량 등 행정비용 단가(B)	4.0	4.0	4.0	-	-	-
합계(A×B)	241	241	241	-	-	723

다.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적소관청이 공유토지 분할 조사 및 측량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행정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억 7,0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7억 100만원(연평균 3억 4,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안 제9조·제10조)	329	329	329	-	-	987	197
조사와 측량 (안 제22조)	241	241	241	-	-	723	145
합계	570	570	570	-	-	1,710	342

주: 본 추계값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3년(2017~2019년) 동안 발생한 재정소요를 바탕으로 제정안의 시행 비용을 추산한 결과이며, 향후 공유토지 분할 관련 수요 변동 등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IV. 부대의견

- 본 추계값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3년(2017~2019년) 동안 발생한 재정소요를 바탕으로 제정안의 시행 비용을 추산한 결과이며, 향후 공유토지 분할 관련 수요 변동 등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연혁 및 사업실적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구분	적용대상	시행기간	실적																																																																																																																																													
1차 시행 － 주관: 내무부 － 시행: 시군구	공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1986.10.1~ 1991.12.31 (5년 3개월)	10만 6천필지																																																																																																																																													
2차 시행 － 주관: 내무부 － 시행: 시군구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1995. 4. 1~ 2000. 3. 31 (5년)	5만3천필지																																																																																																																																													
3차 시행 － 주관: 행정자치부 － 시행: 시군구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2004. 4. 1~ 2006.12. 31 (2년 9개월)	1만 4천필지																																																																																																																																													
4차 시행 － 주관: 국토교통부 － 시행: 시군구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토지	2012. 5. 23~ 2020. 5. 22 (8년)	1만 9천필지																																																																																																																																													
	○ 유치원부지 분할실적(552건 신청중 298건(54%) 분할 완료)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분할신청</th><th colspan="3">분할완료</th></tr><tr><th>계</th><th>유치원</th><th>유치원외</th><th>계</th><th>유치원</th><th>유치원외</th></tr><tr><td>계</td><td>20,405</td><td>552</td><td>19,853</td><td>18,658</td><td>298</td><td>18,360</td></tr><tr><td>서울</td><td>701</td><td>13</td><td>688</td><td>522</td><td>0</td><td>522</td></tr><tr><td>부산</td><td>2,741</td><td>17</td><td>2,724</td><td>2,299</td><td>2</td><td>2,297</td></tr><tr><td>대구</td><td>374</td><td>48</td><td>326</td><td>318</td><td>16</td><td>302</td></tr><tr><td>인천</td><td>489</td><td>73</td><td>416</td><td>414</td><td>49</td><td>365</td></tr><tr><td>광주</td><td>82</td><td>6</td><td>76</td><td>76</td><td>2</td><td>74</td></tr><tr><td>대전</td><td>512</td><td>70</td><td>442</td><td>470</td><td>44</td><td>426</td></tr><tr><td>울산</td><td>183</td><td>22</td><td>161</td><td>145</td><td>0</td><td>145</td></tr><tr><td>세종</td><td>84</td><td>0</td><td>84</td><td>76</td><td>0</td><td>76</td></tr><tr><td>경기</td><td>1,181</td><td>184</td><td>997</td><td>990</td><td>95</td><td>895</td></tr><tr><td>강원</td><td>1,164</td><td>0</td><td>1,164</td><td>1,074</td><td>0</td><td>1,074</td></tr><tr><td>충북</td><td>1,003</td><td>11</td><td>992</td><td>955</td><td>11</td><td>944</td></tr><tr><td>충남</td><td>1,929</td><td>20</td><td>1,909</td><td>1,847</td><td>13</td><td>1,834</td></tr><tr><td>전북</td><td>1,737</td><td>22</td><td>1,715</td><td>1,611</td><td>20</td><td>1,591</td></tr><tr><td>전남</td><td>1,117</td><td>22</td><td>1,095</td><td>1,058</td><td>10</td><td>1,048</td></tr><tr><td>경북</td><td>2,401</td><td>30</td><td>2,371</td><td>2,324</td><td>24</td><td>2,300</td></tr><tr><td>경남</td><td>3,216</td><td>14</td><td>3,202</td><td>3,080</td><td>12</td><td>3,068</td></tr><tr><td>제주</td><td>1,491</td><td>0</td><td>1,491</td><td>1,399</td><td>0</td><td>1,399</td></tr></table>						구분	분할신청			분할완료			계	유치원	유치원외	계	유치원	유치원외	계	20,405	552	19,853	18,658	298	18,360	서울	701	13	688	522	0	522	부산	2,741	17	2,724	2,299	2	2,297	대구	374	48	326	318	16	302	인천	489	73	416	414	49	365	광주	82	6	76	76	2	74	대전	512	70	442	470	44	426	울산	183	22	161	145	0	145	세종	84	0	84	76	0	76	경기	1,181	184	997	990	95	895	강원	1,164	0	1,164	1,074	0	1,074	충북	1,003	11	992	955	11	944	충남	1,929	20	1,909	1,847	13	1,834	전북	1,737	22	1,715	1,611	20	1,591	전남	1,117	22	1,095	1,058	10	1,048	경북	2,401	30	2,371	2,324	24	2,300	경남	3,216	14	3,202	3,080	12	3,068	제주	1,491	0	1,491	1,399	0
구분	분할신청			분할완료																																																																																																																																												
	계	유치원	유치원외	계	유치원	유치원외																																																																																																																																										
계	20,405	552	19,853	18,658	298	18,360																																																																																																																																										
서울	701	13	688	522	0	522																																																																																																																																										
부산	2,741	17	2,724	2,299	2	2,297																																																																																																																																										
대구	374	48	326	318	16	302																																																																																																																																										
인천	489	73	416	414	49	365																																																																																																																																										
광주	82	6	76	76	2	74																																																																																																																																										
대전	512	70	442	470	44	426																																																																																																																																										
울산	183	22	161	145	0	145																																																																																																																																										
세종	84	0	84	76	0	76																																																																																																																																										
경기	1,181	184	997	990	95	895																																																																																																																																										
강원	1,164	0	1,164	1,074	0	1,074																																																																																																																																										
충북	1,003	11	992	955	11	944																																																																																																																																										
충남	1,929	20	1,909	1,847	13	1,834																																																																																																																																										
전북	1,737	22	1,715	1,611	20	1,591																																																																																																																																										
전남	1,117	22	1,095	1,058	10	1,048																																																																																																																																										
경북	2,401	30	2,371	2,324	24	2,300																																																																																																																																										
경남	3,216	14	3,202	3,080	12	3,068																																																																																																																																										
제주	1,491	0	1,491	1,399	0	1,399																																																																																																																																										